결재	작성자	검토자	승인자

협력사 행동규범

차수	제(개)정일자	주요 개정 내용	담당부서
1	2026. 11. 01	최초 제정	관리부

대광소결금속(주)

제정 취지

대광소결금속(주)(이하 "회사")는 '인간 존중'과 '더불어 함께하는 기업문화'를 바탕으로 윤리강령과 인권경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회사의 제품은 협력사와 함께 만들어지므로, 인권 · 안전 · 환경 · 윤리에 대한 책임 또한 공급망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.

이에 회사는 협력사가 지켜 주길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담아 본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. 회사는 협력사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함께 개선하는 동반자로서,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행동규범은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가 인권 · 노동, 안전보건, 환경, 윤리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하여,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함께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행동규범은 회사에 원자재 · 부품 · 설비 ·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(이하 "협력사")와 그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 ② 회사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사내 협력사 · 용역업체(경비 · 미화 · 급식 등)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. ③ 협력사는 자사의 하위 협력사가 이 행동규범과 같은 수준의 기준을 지키도록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(기본 원칙) ①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와 지역의 법령을 준수한다. ② 법령과 이 행동규범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더 높은 기준을 따른다. ③ 회사의 윤리강령(2025.08.22 제정)과 인권경영 정책(2025.08.22 제정)의 취지를 존중한다.

제2장 인권 · 노동

제4조(강제노동 금지) 협력사는 폭행 · 협박 · 감금 등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시키지 않으며,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5조(외국인 근로자 보호) ① 협력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련 법령(고용허가제 등)에 따라 합법적으로 채용한다. 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. ③ 여권 ·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회사가 보관하거나 본인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. ④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6조(아동노동 금지 · 연소근로자 보호) 협력사는 법정 최저 고용 연령 미만인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.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야간작업 ·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하지 않는다.

제7조(근로시간) 협력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(주 52시간 상한), 휴게시간, 주휴일 · 연차유급휴가를 준수하며, 연장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법정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.

제8조(임금 · 복리후생) ① 협력사는 최저임금법 이상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,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. ②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며,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을 제공한다. ③ 합리적 사유 없는 임금 공제나 금전적 징계를 하지 않는다.

제9조(차별 금지) 협력사는 채용 · 임금 · 교육 · 승진 · 해고 등에서 성별, 나이, 학력, 인종, 민족, 국적, 출신지역, 종교, 장애, 사회적 신분,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제10조(괴롭힘 · 성희롱 금지)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폭언 ·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금지하고, 예방교육을 실시하며,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한다.

제11조(결사의 자유) 협력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 ·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존중하며,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.

제3장 안전보건

제12조(안전보건 관리체계) 협력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담당자와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한다.

제13조(위험성평가 및 예방) 협력사는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끼임 · 추락 · 화재 등 유해 ·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, 기계 · 설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,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.

제14조(안전보건 교육) 협력사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,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 자료나 그림 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.

제15조(비상대응) 협력사는 화재 · 폭발 · 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한다.

제16조(산업재해 보고)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 ② 회사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협력사는 재해 발생 즉시 회사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알리고, 회사의 안전수칙과 작업허가 절차를 따른다.

제17조(보건 · 생활시설) 협력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, 휴게실 · 식당 · 기숙사 등 근로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.

제4장 환경

제18조(환경법규 · 인허가) 협력사는 대기 · 수질 · 폐기물 · 화학물질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,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유효하게 유지한다.

제19조(오염물질 · 폐기물 관리)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과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고,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· 보관하여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며,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.

제20조(유해화학물질 관리)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며, 누출을 막기 위한 보관 · 취급 기준을 지킨다.

제21조(제품 함유 규제물질) 협력사는 회사에 납품하는 원자재 · 부품에 대해 법령과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용 금지 · 제한 물질 기준을 지키고, 회사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.

제22조(에너지 · 온실가스) 협력사는 전력 · 연료 등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하고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며, 회사가 요청하면 에너지 사용량 ·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제공한다.

제5장 윤리 · 책임광물

제23조(부패 · 뇌물 금지) 협력사는 회사 임직원을 포함한 거래 상대방에게 금품 · 향응 ·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으며, 회사 임직원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제29조의 신고 채널로 알린다.

제24조(공정거래 · 이해충돌) 협력사는 담합 · 허위자료 제출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회사 임직원과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. 회사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(윤리강령 제13조).

제25조(정보보호 · 지식재산권) 협력사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와 고객사의 도면 · 기술자료 ·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, 거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제26조(책임광물) ① 협력사는 분쟁지역의 무장단체 자금원이 되거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광물(주석 · 탄탈럼 · 텅스텐 · 금 등)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 ② 회사가 요청하면 책임광물 보고 양식(CMRT)을 작성하여 제출한다.

제6장 이행 · 점검 · 신고

제27조(준수 서약) 협력사는 신규 거래 시작 시 및 회사가 요청하는 주기에 따라 별지 「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다.

제28조(자가점검 및 확인) ① 회사는 협력사에 연 1회 이 행동규범에 따른 자가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협력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.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협력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. ③ 점검 결과는 협력사 선정 ·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.

제29조(신고 채널 및 신고자 보호) ① 이 행동규범 위반이나 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를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아래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.

- 홈페이지 사이버 신문고 : www.dksinter.com
- 관리부 : TEL 053-719-9900 / E-mail mgm@dksinter.com

② 회사는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하고,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나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.

제30조(위반 시 조치) ① 회사는 협력사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개선을 요청하고, 협력사는 개선계획을 수립 · 이행한다. ② 강제노동 · 아동노동 · 뇌물 등 중대한 위반이거나 개선 요청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거래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.

제31조(협력 및 지원) 회사는 협력사가 이 행동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, 고객사의 ESG 요구사항을 공유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행동규범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 회사는 법령, 고객사 요구사항,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행동규범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협력사에 알린다.

[별지]

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

당사는 대광소결금속(주)의 「협력사 행동규범」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**인권 · 노동** :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하지 않고, 차별 · 괴롭힘을 금지하며, 근로시간 · 임금 관련 법령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지킵니다.
2. **안전보건** : 위험성평가 · 안전교육 · 보호구 지급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이행합니다.
3. **환경** : 환경 법령을 준수하고 오염물질 · 폐기물 · 화학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합니다.
4. **윤리** : 뇌물 ·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, 공정하게 거래하며, 거래 중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합니다.
5. **책임광물** : 분쟁광물 사용을 피하고, 요청 시 책임광물 보고 양식(CMRT)을 제출합니다.
6. **이행 확인** : 대광소결금속(주)의 자가점검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,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합니다.

회사명	
사업자등록번호	
주소	
공급 품목	
담당자 (연락처)	
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
20 년 월 일

대광소결금속(주) 대표이사 귀하